

#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일부개정 의견수렴

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8일

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

## 1. 개정사유

- **개인사물함 설치예정**에 따른 이용수칙 제12조(개인사물함) 신설
- 이용수칙 제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) 제1항 제6호 문구 수정

## 2. 주요내용

- **안 제12조(개인사물함) : 신설**

### 제 12조(개인사물함)

- ① 회원은 수영장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별지 1호를 작성 및 신청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거 신청을 허가할 때 공단은 보증금(10,000원)을 예치시킨다.
- ③ 이용기간은 보증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- ④ 회원이 개인사물함을 파손할 경우 보수비용은 회원본인이 부담하며, 내용물 분실 시 공단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
- ⑤ 회원은 제3항에 의거 이용이 종료될 경우 별지2호를 작성 및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- **안 제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) : 수정**

기존(~에서)	변경(~으로)
제 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) 6.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	제 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박탈) 6. 수영장의 허가 없이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

3. 이용수칙 일부개정안 : 별첨

4. 의견수렴 기간 : 2022. 1. 28. ~ 2. 17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남수영장으로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 제출 사항

가. 일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○ 의견 제출할 곳

가. 주 소 : 우)59715 전남 여수시 내동1길 2 진남수영장(오림동)

나. 받는사람 :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(참조 : 체육시설팀장)

다. 전화번호 : 061)652-8225, 팩스 : 061)652-8226

별첨 1. 이용수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1부. 끝.

[별첨 1]

## 이용수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서

이용수칙명 :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일부개정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이용수칙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진남수영장 이용수칙 신규대조문

개정 전(~에서)	개정 후(~으로)
<p>제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)</p> <p>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6.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</p>	<p>제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)&lt;수정&gt;</p> <p>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6. <b>공단의 허가 없이</b>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</p>
<p>-</p>	<p>제12조(개인사물함)&lt;신설&gt;</p> <p>① 회원은 수영장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별지 1호를 작성 및 신청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거 신청을 허가할 때 공단은 보증금(10,000원)을 예치시킨다.</p> <p>③ 이용기간은 보증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</p> <p>④ 회원이 개인사물함을 파손할 경우 보수비용은 회원본인이 부담하며, 내용물 분실 시 수영장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</p> <p>⑤ 회원은 제3항에 의거 이용이 종료될 경우 별지2호를 작성 및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.</p> <p>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.</p>

# 진남수영장 이용수칙

## 제1장 회원 및 강습

### 제1조(목적)

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진남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회원)

- ① 진남수영장(이하 “수영장”)의 회원 구분은 강습 회원(일반강습반, 어린이반, 실버반), 월권 자유수영,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, 강습 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  1. 일반 강습반(초급·중급·고급반) :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
  2. 마스터 강습반 :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서 자유형·배영·평영·접영 등 네 가지 영법(200m 완주 가능자)이 모두 구사 가능하여 수영강사의 테스트를 합격한 자
  3. 어린이반 :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
  4. 실버반 :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
  5. 자유수영반 : 대상 및 강습 기간 제한 없음
-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### 제3조(온라인 강습신청)

- ① 온라인 강습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온라인 강습신청 시 동일 강습 수준 내에서 최대 2개 강습반까지 신청가능하다.
- ③ 온라인 강습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,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(회원)에게 있다.
- ④ 온라인 강습신청을 완료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로 접수된다. 추후 수영장에서

정한 일정에 따라 추첨이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해 강습이 가능하다. 단, 강습중인 회원은 강습신청이 불가하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강습반은 강습 중에도 대기 가능하다. 단, 마스터반 강습중일 때는 제외한다.

#### 제4조(회원등록)

- 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며,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- 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, 미 등록 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.
- ③ 강습당첨자는 회원등록을 마쳐야 하며,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이용료 결제 및 이용수칙 서약서를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.
- 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상시 가능하다. 단, 락커 상황에 따라 즉시이용이 아닌,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.
- ⑤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양도·양수가 불가하며, 분실 시 즉시 수영장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한다.(재발급 수수료 2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)

#### 제5조(강습)

- 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,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.
- ② 반별 강습시간(자유수영포함)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, 50분 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.
- 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.
- ④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.
- ⑤ 강습반 회원은 강습도중 강습반 및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.
- ⑥ 모집정원 미달 시 강습효과 증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강습반을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이용료)

- ① 이용료는 「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- ② 이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할 수 있다.

## 제2장 반환 및 변경

### 제7조(이용료 반환)

- 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.
  1. 재난,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
  2. 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
  3. 제 1항 제 2호 및 3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 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
  4. 제 3호의 위약금은 프로그램 시작 전 이용료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용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 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.
  1.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: 전액 반환
  2.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: 이용료 등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
  3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: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
- 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
- ④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운영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불한다.
- ⑤ 강습시작일이 명시되기 전까지는 위약금 공제(10퍼센트) 없이 일할 계산한다.
- ⑥ 2개월이상 결제한 경우 강습 잔여일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한다.

### 제8조(회원기간 연기)

- ① 회원인 경우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  1. 연속하여 7일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할 경우
  2. 그 밖에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경우
- ②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(운영시간)

- ①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:00부터 20:20까지, 토요일은 09:00부터 17:30까지이다.
- ②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,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.
  - 1.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2. 수영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 시
  - 3. 시설의 보수, 보강,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

## 제3장 시설의 이용

### 제10조(이용자 준수사항)

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용자는 수영장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,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2.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,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.
- 3. 여성회원으로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.
- 4.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.
- 5.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·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.
- 6.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 하며,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
- 7. 만12세 이하 초등학생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(가족, 선생님, 인솔자)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
- 8. 수영장 내부로는 외부음식물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.
- 9.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,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

중단하고 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.

10. 수영장 내 휴대폰 또는 촬영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.
11.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, 예절을 지켜야 한다.

### 제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)

- 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1.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
  2.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영품, 샤워장, 탈의실,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
  3.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
  4. 직원에게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
  5. 화장실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, 염색약을 바른 경우
  6. 심신질환, 전염성질병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  1. 수영장 안에서 다이빙 하는 경우
  2.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,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
  3. 본인 강습반이 아닌,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(초급오전반 → 초급저녁반, 자유수영 → 초급새벽반 등등)
  4.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할 경우
  5. 타인에게 특정 영법, 수모,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
  6. **공단의 허가 없이**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
  7.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
  8.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

### 제12조(개인사물함)

- ① 회원은 수영장 내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별지 1호를 작성 및 신청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거 신청을 허가할 때 공단은 보증금(10,000원)을 예치시킨다.
- ③ 이용기간은 보증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- ④ 회원이 개인사물함을 파손할 경우 보수비용은 회원본인이 부담하며, 내용물 분실 시 공단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.
- ⑤ 회원은 제3항에 의거 이용이 종료될 경우 별지2호를 작성 및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, 이 때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⑥ 회원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관함 내 물건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### 제13조(손해배상)

- ① 수영장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,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. 단,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
- ③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
- ④ 수영장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, 지병,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⑤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 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- ⑥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.

### 제14조(분실물)

락커룸, 샤워실 등 수영장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,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### 제15조(고지)

수영장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### 제16조(기타)

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, 수영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

### 제17조(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)

- 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
- ② 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
- 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## 부 칙

본 이용수칙은 2022. 0. 00. 부터 시행한다.

### 별지/서식

- [별지1] 진남수영장 개인사물함 신청서
- [별지2] 진남수영장 개인사물함 환불신청서
- [별지3] 진남수영장 개인사물함 관리대장







